관리	
번호	

[]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[]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

([]소득자 보관용 []발행자 보관용 []발행자 보고용)

	거주구분	거주	자1/비	거주자2				
	거주지국	거주	거주지국코드					
	내 • 외국인	내 :	국인1 /	외국인9				
	외국인단일세율 ⁻	적용	여 1	/ 부 2				
1	외국밥인소속 피견근로	자야부	여 1	/ 부 2				
	국적	국	덕코드					
	세대주 여부	세대	내주1,	세대원2				
	연막정산 구분	계속	근로1	중도퇴사2				

		① 법인명(상	호)			② 다	표 자(성	명)				
징	수	③ 사업자등록	·번호			4) 주	민 등 록 빈	선 호				
의	무자	③-1 사업자든	· 위과세	자 여부	여1 / 부2	3)-2	종사업장	일련번호				
		⑤ 소 재 지(주소)									
Ļ	:득자	⑥ 성	명			⑦ 주	민등록반	선 호(외국인	등록번호)			
	. 7 ^[⑧ 주	소									
		구 분		주(현)	종(전	<u>d</u>)	종(전)) (16–1	납세조합		합 7	계
	9 =	그 무 처 명										
	① 人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
	11) =	무기간		~	~		~		~		~	
근 무	12	나면기간		~	~		~		~		~	
처	13 =	급 여										
별	14 성	나 여										
소	15 인	· 정 상 여										
득	15-1	 주식매수선택권 형	일이사									
명 세	15-2	우리사주조합인	 출금									
^	15-3 8	일원 퇴직소득금액 한	· 도초고액									
	(15)-4											
	16 계											
		구외근로	MOX									
П		야간근로수당	00X									
비		출산 보육수당	QOX									
과		연구보조비	HOX									
세 및	18-5											
감	18-6											
면 면		~										
소	18-29	9										
득 명		· -련보조수당	Y22									
성세		과세소득 계										
* 11		<u> </u>										
		<u>구</u>		<u> </u> 	(78)	 소 =	- 세	 ⑦ 지방소·	특세 (8i) 농	 어촌특	 ·별세
	(72) Z		 액									
Ш		③ 종(전)근무기		ΓI								
	기난부	실 (결정세액란의	1 1 111									
액		(필증제국년- 백 세액을 적습니다										
명		③ 주(현)근두										
세	(75) L	ᆜ ^{ᅇᇹᆛᄾᆮ} ᄼᆖᆝ ᅪᅷ특례세액	•									
"		- 	네 액((72)-(73)-(74)-(75))								
	_	<u> </u>				다.						
									년	Į	월	일

징수(보고)의무자

세 무 서 장 귀하

(서명 또는 인)

	$\overline{}$		7-1/0			1									(8쪽 중 제2쪽)
	21) Z	종급 설용	급여(@ 시에분	6), 다[= 여기	란 오 ㅏ근록	기국인 로소드	단일세율		48	종합	소	투 과세	표준		
			소득				1 /								
			소득금						49	산출	늘세일	4			
		기	24 논							50	Г <i>У</i>	_ ニ득세밭	4		
		기복공제	25 H	ዘ 우	자					90	. 1	-국세달	i		
		체	26 -	브 양 7	가 족((-	병)		, 111	(51)	「주	세트레제	데한법 (52)	제외)	
		추			· 구 대(병)		세	01)		- 11 — - III		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
		가	<u> </u>		인(` 명	·		액	(52)	「조	세특례	제한법 시	네30조	
		공			 자		,		감						
		제	30 Ē		보고 가 족				면	53	조서	∥조약			
		연		 -민연금											
		금			 무원인					⑤ 세 액 감 면 계					
		보 험	③ 공 적		'ㅡ 인연										
		료	여 금						⑤ 근로소득						
		공	모점료고제				원연금						공제대상자		
	제 으 시 환 별정우체국연금 종 가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 양보험로 교화)									56			6세 이하	(명)	
													출산 • 입양		
			增显	(4) 고:			1 /			연	57)	과학기	술인공제	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	
	소			⑦ 주 트	색인차		 기관			금	EQ.	Γ¬⇒τle	= X _01 HXL	공제대상금액	
Iv	득			차입금 금상환	원리	거주				계	00	법에때	튀직급여 보장 남른 퇴직연금	세액공제액	
'	공			百성원		15년 미								공제대상금액	
정	제				2011년 이전	15년~29			-	좌	(59)) 연금저	죽	세액공제액	
9		특			채입분	30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,					보장성		공제대상금액		
AL		별			2012년						60	보허크	세액공제액		
산		소 득	③ 주택	(J) 장	이후 채입분	후 비거치상환 분	환 대줄				00	/ 	장애인전용	공제대상금액	
			주택 자금	주택저	(15년	그 밖의	대출						보장성	세액공제액	
명		공	ΛΙШ	주택저 당차입 금이자	이상)		7717716171				61)) 의료비		공제대상금액	
, ,		제		금이자 상환액		15년 이상 기차 로 10년 고정	고정금리이면서, 비거치상환 대출			_				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	
세					- ' 2015년		고정금리이거나,		세	특	62	교육비		세액공제액	
					이후		비거치상환 대출		액	별			10만원	공제대상금액	
					채입분		그 밖의 대출		공	세		⑦ 정치	니이하	세액공제액	
							고성급리이거나, 비거치상환 대출		제	액		기부	급 금 10만원	공제대상금액	
			(35) フ	 부금(이월-		PITOL 112			공	63		<u></u> 초과	세액공제액	
			36 Z							제	기	(l) 법정	덩기부금	공제대상금액	
	37			두 금						-	기부 금	@ O-	ᅴᇨᅎᇴᇶ	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	
				연금저		,	-11 H -				一古	U 기년	믜사주조합 부금	세액공제액	
		(39)	소기입				제부금							공제대상금액	
		<u>an</u> =	주태	⑦ 참	성약저	축						(종급	성기부금 고단체외)	세액공제액	
		④ 주택 마 련 저 축 ④ 주택청약종합저축							☞,진정	성기부금 경기부금	공제대상금액				
	소득공체 (1) 근로자주택마련저축								고단체)	세액공제액					
		④ 투자조합출자 등							_	계 교조사	액공제				
										66	_	표준석 조합공			
				카드등 U 즈 도 7											
				아주조			. ⇒ ∓l			67		백차입금 1나보	ī		
				유지 중 기하투:						⑥ 외국납부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		공제대상금액			
		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그 밖의 소득공제 계							⑩ 월세액			세액공제액		
		46)	그 밖	의 소	누상자	11 계				70	세	액 공 :	제 계	. 10 " 1	
	47)	소득	공제	종합힌	노 2	호 과안			71)	결 :	정 사	네 액(@	9-54-70)		

⑦ 소득·세액공제 명세[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"○"표시(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)를 하며, 각종 소득공제·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]

	인적공제	항	목				각종 소득공제・세액공제 항목										
관계 코드	관계 성 명 기본 경로 출산 코드 공제 우대 입양		출산 입양	712		보험료				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							
내 • 외 국인	주민등록번호	부 녀 자	한 부 모	장 애 인	6세 이하	자료 구분	건강· 고용 등	보장성	장애인 전용 보장성	의료비	교육비	신용카드 (전통시장 • 대 중교통 제외)	직불가드등 (전통시장·대 중교통 제외)	현금영수증 (전통시장·대 중교통 제외)	전통시장 사용액	대중교통 이용액	기부금
	공제 항목에 해당 인원수를 적습니다. (자녀: 명)					국세청 기타											
0)			국세청											
	(근로자 본인)					기타											
						국세청											
	_					기타											
						국세청											
	-					기타											
						국세청											
	-					기타											
						국세청											
	-					기타											
						국세청											
	-					기타											

작성 방법

「소득세법」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, 이 경우 "⑨ 근무처명"란 및 "⑩ 사업자등록번호"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. 다만, 근무 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- 1.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,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(※ ISO국가코드: 국세청홈페이지→국세정보→국제조세정보→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). 예) 대한민국: KR, 미국: US
- 2.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내·외국인"란에 "외국인 9"를 선택하고 "국적 및 국적코드"란에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.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"외국인단일세율 적용"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.
- 3. 원천징수의무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-1에서 여1을 선택하고, ③-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.
- 4.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(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)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5. "I. 근무처별 소득명세"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, "II.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"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(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"II.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"란의 "⑩ 비과세소득 계"란 및 "⑩-1 감면세액 계"란에 총액만 적고, "II.비과세 소득"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).
- 6.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"⑩-1 납세조합"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, 「소득세법」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공제금액을 "⑪ 납세조합공제"란에 적습니다. 합병,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(전)란에 별도로 적습니다.
 - 또한,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"근무처별 소득명세 종(전)"란에 별도로 적습니다.
- 7. "⑩ 총급여"란에는 "⑯계"란의 금액을 적되, 외국인근로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이 서식에서 "조특법"이라 합니다) 제18조의2제2 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"⑯계"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 ·공제·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8. "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(짧~飯)"란과 "그 밖의 소득공제(®~飯)"란은 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(별지 제37호서식)의 공제액을 적습니다(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).
- 9. "연금계좌(⑤~⑥)"란과 "특별세액공제(⑥~⑥)"란은 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(별지 제37호서식)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.

작성 방법

- 10. ⑱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㉓ 주택자금공제(②+④), ৷③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, 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(②+④+⑥), ④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3호·제4호는 제외), ④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, ⑥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,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.
- 11.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③ 차감소득금액에서 ④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④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.
- 12. ⑤ 납부특례세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 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므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- 13.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. 다만,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(17%)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.
- 14.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, 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(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)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"0"으로 적습니다.
- 15. "⑦ 소득ㆍ세액공제 명세"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.

가 관계코드란

구 분	관계코드	구 분	관계코드	구 분	관계코드
소득자 본인 (소득세법 §50 ① 1)	0	소득자의 직계존속 (소득세법 § 50 ① 3 가)	1	배우자의 직계존속 (소득세법 § 50 ① 3 가)	2
배우자 (소득세법 §50 ① 2)	3	직계비속(자녀·입양자) (소득세법 § 50 ① 3 나)	4	직계비속(코드 4 제외) (소득세법 § 50 ① 3 나)	5*
형제자매 (소득세법 §50 ① 3 다)	6	수급자(코드1~6제외) (소득세법 § 50 ① 3 라)	7	위탁아동 (소득세법 §50 ① 3 마)	8

- *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.
 - ※ 관계코드 4∼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.
- 나. 내 · 외국인란: 내국인의 경우 "1"로, 외국인의 경우 "9"로 적습니다.
- 다. 인적공제항목란: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"○" 표시를 합니다(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).
- 라. 국세청 자료란: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소득·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·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마. 기타 자료란: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(예를 들면,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"의료 비 항목"의 "기타"란에 적습니다).
- 바. 각종 소득·세액 공제 항목란: 소득·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(소득·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).
- 16.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,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·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 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17.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·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, 퇴직연금·연금저축·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 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(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)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18. ③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, 30년 이상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(이하 이 서식에서 "소득령"이라 합니다)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19. ⑰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.

구분	코드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	1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	2
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	3

20.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·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				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	7 6 1107/
구분	법조문	코드	기재란	비과세항목	지급명세서 작성 여부
	소득세법 § 12 3 가	A01		복무 중인 병(兵)이 받는 급여	×
	소득세법 § 12 3 나	B01		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	×
	소득세법 § 12 3 다	C01		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	×
	소득세법 § 12 3 라	D01		「근로기준법」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	×
	소득세법 § 12 3 마	E01		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	×
	工 1.11日 2 15 0 1	E02		「국가공무원법」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	×
	소득세법 § 12 3 바	E10		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(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) 및 사망일시금	×
	소득세법 § 12 3 사	F01		「공무원연금법」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	×
	소득세법 § 12 3 아	G01	18-5	비과세 학자금(소득령 § 11)	0
		H01	18-9	소득령 § 12 1(법령·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)	0
	_	H02		소득령 § 12 2 ~ 3(일직료·숙직료 등)	×
	_	H03		소득령 § 12 3(자가운전보조금)	×
	_	H04		소득령 § 12 4, 8(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)	×
	_	H05		소득령 § 12 9 ~ 11(경호수당, 승선수당 등)	0
	_	H06	18-4	소득령§12 12 가(연구보조비 등)-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	0
	_	H07	18-4	소득령 § 12 12 가(연구보조비 등)-「고등교육법」	0
	소득세법 § 12 3 자	H08	18-4	소득령§12 12 가(연구보조비 등)-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	0
	_ 1 11 3 12 0 1	H09	18-4	소득령 § 12 12 나(연구보조비 등)	0
	-	H10	18-4	소득령 § 12 12 다(연구보조비 등)	0
	_	H14	18-22	소득령 § 12 13 가(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)-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	0
	_	H15	18-23	소득령 § 12 13 나(사립유치원 수석교사·교사의 인건비)-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	0
	_	H11	18-6	소득령 § 12 14 (취재수당)	0
비과세		H12	18-7	소득령 § 12 15 (벽지수당)	0
-1-1-11		H13	18-8	소득령 § 12 16 (천재·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)	0
		H16	18-24	소득령 § 12 17 (정부·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)	0
	소득세법 § 12 3 차	101	18-19	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	0
	소득세법 § 12 3 카	J01	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	×
	소득세법 § 12 3 타	J10		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받는 연금	×
	소득세법 § 12 3 파	K01	18-10	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	0
	소득세법 § 12 3 하	L01		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	×
		M01	18	소득령 § 16①1(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) 100만원	0
	소득세법 § 12 3 거	M02	18	소득령 § 16①1(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) 300만원	0
		M03	(18)	소득령 § 16①2(국외근로)	0
	소득세법 § 12 3 너	N01		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	×
	소득세법 § 12 3 더	001	18-1	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	0
	소득세법 § 12 3 러	P01		비과세 식사대(월 10만원 이하)	×
		P02		현물 급식	×
	소득세법 § 12 3 머	Q01	18-2	출산,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(월 10만원 이내)	0
	소득세법 § 12 3 버	R01		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	X
	소득세법 § 12 3 서	R10	18-21	「교육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	0
	소득세법 § 12 3 어	R11	18-29	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	0
	구 조특법 § 15	S01	18-11	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	0
		Y02	18-14	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(50%)	0
	조특법 § 88의4⑥	Y03	18-15	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(75%)	0
	. =	Y04	18-16	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(100%)	0
	소득세법 § 12 3 자	Y22	19	소득령 § 12 13 다(전공의 수련보조수당)	0
	조특법 § 18	T01	(18)-12	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	0
71-1	エ 巨出 \$ 00	T10	18-25	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(100%)	0
감면	조특법 § 30	T11	18-26	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(50%)	0
	7 U 7 Cb	T12	18-27	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(70%)	0
	조세조약	T20	18-28	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(교사・교수)	0

				(8측 중 제6측)
	연금・	· 저축 등 소득·세액	 공제명세 서	
	① 상호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성 명		④ 주민등록번호	
1. 인적사항	⑤ 주 소		(전화번호)
	⑥ 시업장 소재지		(전화번호	:)
2. 연금계좌 서	액공제			
1) 퇴직연금계3	작			
* 퇴직연금겨	<mark>좌에 대한 명세를</mark> 각	악성합니다.		
퇴직연금 구분	금융회사 등	계좌번호 (또는 증권번호)	납입금액	세액공제금액
2) 연금저축 겨	 좌			
' ' ' ' ' ' ' '	좌에 대한 명세를 직	성합니다.		
연금저축 구분	금융회사 등	계좌번호 (또는 증권번호)	납입금액	소득ㆍ세액 공제금액
3. 주택마련저	축 소 득공 제			
* 주택미련저축	· 소 득공 제에 대한 당	명세를 작성합니다.		
저축 구분	금융회사 등	계좌번호 (또는 증권번호)	납입금액	소득공제금액
	자 <mark>증권</mark> 저축 소득공제			
	-	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. 계좌번호		
금: 	융회사 등 	(또는 증권번호)	납입금액	소득공제금액

작성 방법

- 1. 연금계좌 세액공제, 주택마련저축·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·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.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·세액 공제금액을 적고, 공제금액이 영(0)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.
- 2. 퇴직연금계좌에서 "퇴직연금 구분"란은 퇴직연금{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(IRP)}·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3. 연금저축계좌에서 "연금저축 구분"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4.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"저축 구분"란은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[] 월세액 ·[]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· 세액공제 명세서

	① 상 호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성 명	④ 주민등록번호	
1. 인적사항	⑤ 주 소	(전화번호:)
	⑥ 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

2.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

① 임대인 성 명 (상 호)	®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번호)	9 유형	⑩ 계약 면적(㎡)	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	⑫ 계약 임대차 기 개시일	추서 상 계약기간 종료일	⑪ 연간 월세액(원)	① 서액공제금액 (원)

- ※ ⑨ 유형 **구분코드** 단독주택: 1, 다가구: 2, 다세대주택: 3, 연립주택: 4, 아파트: 5, 오피스텔: 6, 고시원 : 7, 기타: 8
- ※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(예시) 2013.01.01.

3. 거주자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

1)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

15 대주(貸主)	⑥ 주민등록번호	⑰ 금전소비대차		원	리금 상환역	② 공제금액	
(19) 「「「「「「「「「」」」	(B) 구인등측면도 	계약기간	이자율	⑨ 계	20 원금	②1) 이자	W 등세급액

2) 임대차 계약내용

② 임대인 성 명 (상 호) (사업자번	(번호 호) ²⁵ 유형 연적(약 ② 임대차계약서 상 ㎡) 주소지		②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	
(상호) (가 기		1 = 1	개시일	종료일	(원)

- ※ ⑤ 유형 구분코드 단독주택: 1, 다가구: 2, 다세대주택: 3, 연립주택: 4, 아파트: 5, 오피스텔: 6, 고시원: 7, 기타: 8
- ※ 🕉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(예시) 2013.01.01.

작성 방법

- 1.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·세액공제에 대한 명 세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2.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·원리금상환액과 소득·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, 공제금액이 "영(0)"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
- 3. ⑨, ⑩ 유형은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, 고시원,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**유형의 구분코드**를 적습니다
- 4. ②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.

(서명 또는 인)

관리	
번호	

세 무 서 장

귀하
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매월분)

([]소득자 보관용 []발행자 보관용 []발행자 보고용)

거주	구분	거주자1/비거주자2				
7年		거주	 주지국코드			
내 • 오	미국인	내국인1 /외국인9				
외국인	단일세율?	덕용	여 1 / 부 2			
국전		국				

징	수	③ 사어자드로버 5			② 대 표 자(성 명)							
ı	' 무자				④ 주 민 등 록 번 호							
-1	十八	⑤ 소 재 지 ((주소)									
, ا	:득자	_{트 지} ⑥ 성 명			⑦ 주 민 등 록 번 호							
┖	·¬^r	⑧ 주	소	·								
		구 분		국 내	국 외			합 7	계			
	⑨ 근 무 처 명											
	⑩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	
	⑪ 근무기간			~		~		~				
	⑫ 감면기간			~		~		~				
	⑬ 급 여											
	(4) 상 여											
	⑤ 인 정 상 여											
	15)-1	⑤-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										
	15)-2	⑤-2 우리사주조합인출금										
	15-3	일원 퇴직소득금액 현	· 									
	15-4											
	16 계											
	18 국	·외근로	MOX									
Ш	18-1	야간근로수당	00X									
비	18-2	출산 ' 보육수당	QOX									
 세	18-4	연구보조비	нох									
및	18-5											
감	18-6											
면		~										
소 득	18-29)										
 명	19 수	:련보조수당	Y22									
세	②D H	과세소득 계										
	@-1	감면소득 계										
	② 근로소득					차 감 납 부 세 액						
III	@				─ ∅ 소 득 세							
세	②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		소 득 세									
액	세액 @ 외국납부		<u> </u>		② 지방소득세② 농어촌특별세							
계		고ᅰ ② 납세조합										
산	@ I !	[(23-24) × 10/100]										
		없 납부특례세액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										
	カゴ	ㅂㅜ 세백글 `	STU	1년.			년	1	월	일		

작성 방법

납세조합

- ※ 1. 「소득세법」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.
 2. "⑨ 근무처명"란 및 "⑩ 사업자등록번호"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. 다만,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